

섬 관광진흥법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22
----------	-------

발의연월일 : 2026 10. 16.

발 의 자 : 김승수 · 김선교 · 최수진
강명구 · 서지영 · 정점식
조승환 · 이성권 · 주철현
문대림 · 정일영 · 박성훈
서천호 · 김원이 · 배준영
성일종 · 서일준 · 강승규
신동욱 · 조계원 의원
(2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 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촉진하며, 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의 자연 환경 및 주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섬의 관광객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섬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관광사업에서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섬치유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섬 관광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촉진하며, 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사람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滿潮)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지역(인공적으로 조성된 지역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섬관광자원”이란 섬의 자연, 문화, 역사, 전통, 생태환경 및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관광을 말한다.
4. “지역 중심 관광”이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며,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관광을 말한다.
5. “섬관광특구”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의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 및 특구 지정

제4조(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섬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조성
3. 섬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섬 관광과 환경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섬 관광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6. 지역 중심 관광 활성화 방안
7. 해상교통 확충 및 여객 운임 지원 방안

8. 그 밖에 섬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섬관광특구의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섬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및 행정 지원
2. 관광 관련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3. 지역 관광업체 및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
4. 환경 보호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③ 그 밖에 섬관광특구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한 섬 관광 및 환경 보호

제6조(친환경 관광 개발 및 보존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개발 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력하여 섬 지역의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과잉관광 방지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의 자연 환경 및 주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섬의 관광객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섬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관광(이하 “과잉관광”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과잉관광 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섬 지역별 관광객 수용 한계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특정 기간 또는 특정 구역 내 관광객 수 제한 조치
3. 관광객 분산 유도 및 사전 예약제 도입 방안
4. 교통·숙박·쓰레기 처리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담 완화 방안
5.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관광 규제 조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섬 지역의 관광객 증가가 환경 파괴, 교통 혼잡, 주민 생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광객 수 제한 및 사전 예약제 도입

2. 특정 기간 또는 특정 구역의 출입 제한

3. 대중교통 및 관광 이동수단 이용 조정

④ 섬관광특구 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환경 보호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과잉관광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 중심 관광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 중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이 관광산업에서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2. 섬의 전통 문화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

3. 관광객과 지역 주민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 지원

4. 지역 중심 관광 운영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중심 관광이 섬 관광의 핵심 가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중심 관광 운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섬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제9조(섬 관광사업 육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 사업
2. 관광 관련 인프라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3. 섬 지역 관광 종사자 및 주민의 역량 강화 교육
4. 섬 지역 청년의 섬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창업, 능력개발, 주민소득 발굴 등
5. 섬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기업 및 지역주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섬치유관광 진흥)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관광(이하 “섬치유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섬치유관광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의 해양·산림·갯벌·온천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힐링, 명상, 요가, 스파 프로그램 운영

2. 자연 친화적 숙박 시설 및 치유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3. 의료 관광과 연계한 섬 치유 프로그램 개발
4. 고령층·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치유관광 서비스 제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치유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섬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2. 관련 전문가 육성 및 교육 지원
3. 섬 치유 관광지 시설의 환경 정비 및 유지보수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치유관광을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섬치유관광의 운영 기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상교통 확충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상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교통 노선 확충 및 개선
2. 여객 운임에 대한 할인 정책 시행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계 교통망 구축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 확충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